

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
3.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, 다만 특수직무 종사자(운전원, 경비원, 미화원)에 한함
4.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로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